

# 한국의 마이데이터 문제점과 소비자권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의 변화는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생활에서 소비자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언택트 환경에서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데이터 경제시대에 소비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인한 소비자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나라에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2016년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으로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신설하였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sup>1</sup>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정보이동권이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에만 적용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마이데이터의 문제점과 소비자권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마이데이터와 구매정보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할 신용정보 범위에 소비자가 인터넷쇼핑을 하면서 물품을 구매한 정보인 '주문내역 정보 등과 전용카드 이용내역'(이하 주문내역 정보 등)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소비자가 동의한다면 흩어져있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결제, 증권정보 등을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신용정보법」에만 그 근거가 있고 주문내역 정보를 개인 신용정보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민감한 개인 정보인 거래내역을 이렇게 확대 적용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는 향후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관할 부처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규제할 때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모바일 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광범위해지고 있어 인터넷쇼핑물 주문내역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는 호텔, 숙박, 여행, 취미생활, 콘텐츠 구매 등 개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모아진 데이터들이 가명화된 형태로 상업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시계열로 분석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해 저장한다는 부분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2019년말 통과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에서 소비자·시민단체 안에서 특별히 「신용정보법」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시행령의 많은 조항이 법에서 위임받은 주요 부분을 다시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어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이번 주문내역 정보 등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관련내용이 없었으며 8월 공포된 시행령에 갑자기 등

강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주문내역 정보 등이 신용정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문제가 되는 시행령 제2조 제23항의 위임 법률인 「신용정보법」 제2조 1의3호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로 특정하여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문내역 정보 등은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에 포함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금융위원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소비자가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해 왜 필요한지 또 소비자가 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확대해석해 신용정보라고 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활용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별도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GDPR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GDPR 제20조 '정보 이동성에 대한 권리(Right to data portability)'는 정보주체가 컨트롤러<sup>2</sup>에게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정보주체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가 한 정보 관리자에게서 다른 정보 관리자에게로 직접 전송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유럽의 GDPR은 개인정보 이동권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본인 데이터를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였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IT플랫폼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소비자가 이전할 수 있게 하여 앞서의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막고자 하였다.<sup>3</sup>

그러나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이전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향후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 같이 마이데이터 정책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편의성 증대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인 개인의 정보이동권 등 권리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마이데이터는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현행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금융 관련법인 「신용정보법」만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을 규율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 측면만이 강조될 우려가 있다.

이동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자기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자기관리툴(Tool)에 대한 개발도 미진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동권 행사 등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의 개발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될 경우,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이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sup>4</sup>

데이터 사용과 활용에 있어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철회하는 과정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데이터가 잘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가 기반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이동권을 신설해 소비자의 데이터 전반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와 균형이 어느때보다 중요한데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의 문제를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박현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경희법학』, 52(3), 2017 2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를 의미함 3 송미정·김인석, 「유럽 PSD2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29(5), 2019 4 조성은, 「해외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간담회, 2020.9.1